



A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내 A5블록
-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617세대 [전용면적 51㎡ 252세대, 59㎡ 365세대]
- 시 행 사 : [주]NHF제15호공공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신청만 가능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 <https://apply.lh.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접수>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0.24(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800117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은 하남감일 A5블록 공식홈페이지(www.sweetcitya5.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8.10.24(수)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실물건본주택은 없으며, A5블록 공식홈페이지상의 사이버건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NHF CI⁵를 사용할 예정이며, 추후 입주예정자 요청이 있을 경우 브랜드 지침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신청자격자"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가. 세대주
-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5년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기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 ※ 청약과열지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택지유형
서울특별시	25개구	민간택지 + 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민간택지 + 공공택지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광교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민간택지 + 공공택지
	기장군 일광면	공공택지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공택지(민간택지는 제외)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선정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되고,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닐 경우 당첨자로 관리(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 등)되어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고	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온라인 계약	현장계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포함)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무주택3년이상, 납입인정금액 360만원 이상	전체					
2018.10.24(수)	2018.10.29(월) (10:00~17:00)	2018.10.30(화) (10:00~17:00)	2018.10.31(수) (10:00~17:00)	2018.11.1(목) (10:00~17:00)	2018.11.14(수) (14:00)	2018.11.20(화) ~11.22(목) (10:00~17:00)	2018.12.18(화) (10:00~16:00)	2018.12.19(수) ~12.21(금) (10:00~16:00)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하남사업본부 주택홍보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 lit.go.kr)	LH하남사업본부 주택홍보관

- ※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중 '18.10.30(화)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360만원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18.10.30(화) 접수자 수가 일반공급 물량의 180%를 초과할 경우 익일부터는 청약접수가 불가하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물량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풍산동 286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3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18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5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18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당첨 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공급 개요
개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하남갑일 A5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8~25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17세대
[일반공급 91세대(가정어린이집 2세대 포함), 특별공급 526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가정어린이집	최고층수	1층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기타특별
합계										617	62	185	123	31	62	63	89	2			
A5	051.0000A	51A	확장	51.97	18.5140	3.7759	27.7032	101.9631	44.6110	252	24	76	50	13	25	25	39	-	19	16	'21년 1월
	059.0000A	59A-1	확장	59.98	21.3675	4.3578	31.9730	117.6783	51.4868	284	28	85	57	14	28	30	40	2	25	5	
		59A-2	확장	59.97	21.3639	4.3570	31.9677	117.6586	51.4781										18	7	
	059.0000B	59B-1	확장	59.95	21.3568	4.3556	31.9570	117.6194	51.4610	81	10	24	16	4	9	8	10	-	25	2	
		59B-2	확장	59.97	21.3639	4.3570	31.9677	117.6586	51.4781										18	2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501동 101호, 508동 101호 등 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위 공급세대수 배정 시 제외하였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이며,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해당 면적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배정호수는 필로티라인 및 어린이집 배정 예정세대를 제외한 호수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5	051.0000A	51A	58,500	11,700	46,800	460
	059.0000A	59A-1	71,500	14,300	57,200	520
		59A-2				
059.0000B	59B-1	71,500	14,300	57,200	520	
	59B-2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5	051.0000A	51A	55,000	275	113,500	185
	059.0000A	59A-1	62,000	310	133,500	210
		59A-2				
059.0000B	59B-1	62,000	310	133,500	210	
	59B-2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5	051.0000A	51A	43,000	143	15,500	603
	059.0000A	59A-1	54,000	180	17,500	700
		59A-2				
059.0000B	59B-1	54,000	180	17,500	700	
	59B-2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A5	051.0000A	51A	172,578	73,711	98,867
	059.0000A	59A-1	198,124	85,071	113,053
		59A-2	198,064	85,057	113,007
	059.0000B	59B-1	198,433	85,029	113,404
		59B-2	198,595	85,057	113,538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4.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공사지정 은행계좌번호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하남갑일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10.24)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하남시)	30%	·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7.10.24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 거주 ('17.10.24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경기도	20%	· 공고일 현재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17.10.24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거주 ('17.10.24 전입한 경우 포함)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1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 하남시 1년 이상 계속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1년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10.24)	① 경기도	50%	·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은 물량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17.10.24 이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 거주 ('17.10.24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경기도1년미만·서울·인천)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1년 미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 하남시, 경기도 1년이상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경기도1년미만·서울·인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경기도 1년 미만·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1년 미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18.11.14)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 (단,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공급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 자격자”(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신청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자산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자산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가액산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주거용건물</td> <td>단독주택</td> <td>공시가격</td> </tr> <tr> <td>공동주택</td> <td>공시가격</td> </tr> <tr> <td>오피스텔</td> <td>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td> </tr> <tr> <td rowspan="2">비주거용건물</td> <td>공장, 상가 (오피스텔)</td> <td>건물 부속토지</td> <td>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td> </tr> </tbody> </table>		구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구분	가액산정 기준													
주거용건물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8,50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8년식 자동차를 2017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원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원	7,016,284	7,016,284	7,464,006	7,950,972	8,437,938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05,805원)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86,966원)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의 소득을 말함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자료→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 ②국민연금공단, ③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국세청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한부모가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경기동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국방부(10년이상복무군인), 해당 시·도(장애인), 여성가족부(일본군위안부피해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 경기도(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자체(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서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이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8.10.29)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8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9.10.25 ~ 2018.10.24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어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	7,016,284	7,016,284	7,464,006	7,950,972	8,437,938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항별·층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	7,016,284	7,016,284	7,464,006	7,950,972	8,437,938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원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인 무주택자
 -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시는 분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원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원	7,016,284	7,016,284	7,464,006	7,950,972	8,437,938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1순위를 제외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인 이상 : 3점 2인 : 2점 1인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마. 혼인기간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가.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002,072원	4,677,522	4,677,522	4,976,004	5,300,648	5,625,2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5,002,590원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또는 (예비)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 수를 말함
 - ※ 신청자[또는 (예비)배우자]와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전 자녀는 인정하지 않음.
- 재혼한 경우, 재혼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를 입력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 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가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가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알려드립니다” 참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일반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공고문에서 같음)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급신청자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원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7,031,615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하남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접수미달 시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8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에는 1순위가 되지 못함.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8.10.24)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구 분	해 당 사 항
무주택 기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신청기준”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2you.com 또는 APT2you앱)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 ·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청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8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18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일반공급 입주자 자격만 인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8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8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II.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남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공공자, 한부모가족,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8.10.29(월) (10:00 ~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무주택 3년 이상이며, 납입 인정금액 360만원 이상) 	2018.10.30(화)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전체) • 2순위 	2018.10.31(수) (10:00 ~ 17:00) 2018.11.1(목) (10:00 ~ 17:00)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또는 타행 인증서의 사용등록 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8.10.29(월)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8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PC인터넷·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구(블록)선택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터넷청약의 "임대주택"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구(블록)선택 →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7:00

-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하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하남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1년간 입주자선정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 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2you.com)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VII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 등)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18.11.14(수) 14:00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018.11.20(화) ~ 11.22(목) 10:00~17:00	(온라인계약) 2018.12.18(화) 10:00~16:00 (현장 계약) 2018.12.19(수) ~ 12.21(금) 10:00~16:00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1층) ※온라인 계약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18.11.20~2018.11.22)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 등)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시 단순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 등)로 간주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아래 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1년간 당첨제한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조건으로 발급
○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대상자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		대상자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		대상자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⑧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본인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0년이상)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입주 전까지 제출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조건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혼부부 예비배우자용)	예비배우자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의 경우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②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조)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조건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10.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 : 입금계좌는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 (당첨자 본인명의 입금), ※ 현장수납 불가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본인 계약 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 시 서명날인 불가)
	④ 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2018.12.18(화) 10:00~16:00)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온라인계약절차 : 계약금 입금→입금확인(SMS 발송)→[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로그인(휴대폰인증)→계약체결(공인인증서)→계약서 출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온라인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기간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부적격 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선정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NHF제1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센터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 센서등	
공용 옥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화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장애인	기타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8.12.19~2018.12.21)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여건

- 사업지구 북동측에 동서울전력소 및 주변 고압선로가 위치하며, 전파장해, 소음 등 환경기준을 만족함
- 전자파 영향조사 : A3블록, A7블록, 자족2블록, 종2블록 상 동서울전력소 근접 지점
- 고압송전선로(철탑6기)가 지구내를 관통하고 있으나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 등)를 설치하여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임
-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하고 있으며 지구 동측으로 약 1km 내외의 거리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공사 주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감일지구 방향 1차로 확장 계획이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소음저감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으로 도로공사 주관의 방음벽 설치계획이 있으며 일정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남서측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위례신도시북측도로(폭 약 30미터) 공사 진행 중에 있음
- 소음저감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계획이 있음
- A4블록 인접 구간 평면교차로 하부는 남북방향 지하차도로 계획되어 있음
- 지구 경계로부터 북동측 2.7km 내에 군부대 하남비행장(헬리콥터)이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상 항공기 소음예측 결과 감일지구는 주 운항경로 외부로서 항공기 등 소음도 곡선 상 60dB 이하 구역에 위치함 (환경기준 주간 65dB 이하)
- 지구 남동측에 캐슬렉스컨트리클럽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 아파트블록 사업시행자에게 타구/골프장관리기계 소음, 야간라이트에 의한 빛 공해 등을 감안한 아파트 설계토록 통지하였음
- 지구내 학교는 총 6개소(초등 3개소, 중등 2개소, 고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교육시설 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열가압장, 가스공급설비(가스공급시설, 긴급차단시설, 정압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사업지구내 동서를 횡단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3,4단계(D2200×2련, D2400×2련, L-2.3km), 남북으로 비상연결관(D2200 L-0.7km)이 기 매설되어 있으며, 3·4단계는 존치하고 비상연결관은 지구 내 감일~초이간 간선도로변으로 이설할 계획임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입주 후 주변 단지, 학교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단지 외부 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진출입은 서측 도로로만 가능하며, 접속부는 차량 진출 시 좌회전이 가능한 4지 교차로로 계획됨
- 동측에는 공동주택용지(A3BL)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측으로 수변공원이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공원 등에 의해 소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남측으로 최단 약 300m 거리에 동서울 전력소 및 주변 고압선로가 위치하며, 전파장해, 소음 등 환경 기준을 만족함
- 서측에는 공동주택용지(A2, A6BL)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서측이 18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음
- 남측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학교 등에 의해 소음, 사생활 침해 발생 및 경관 저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옥상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될 수 있음
- 북측 소하천(서부천)은 건천으로 평상시 유수의 흐름을 관찰하기 어려움
- 북측에는 수변공원 및 저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저류지는 상시 저류지로 계획되어 있음
- 북측은 23미터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도로 맞은편으로 자족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공간확보를 위하여 501동 101호, 508동 101호(2개호)를 공급보류하였으며, 추후 입주시점에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수 있음.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자도 가정어린이집 인가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단지 외곽에 위치한 일부 동은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694대(지상 8대, 지하 686대, 지상에 상가 3대 별도) 계획되어 있음
- 지상주차 8대는 1동 남측에 설치됨
-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높이(2.1m)가 있어 탑차는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함
- 각동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동 3호라인에 1개층 피로티가 있으며, 이 피로티를 통해 1,2,3호 라인 세대가 동으로 진입함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중앙 주민공동시설 1층에 관리사무소 및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2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멀티프로그램실이 있음
- 경로당은 단지 남측 7동 서측, 보육시설은 6동과 8동 사이에 위치함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상가)은 단지 서측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2개층으로 설치됨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RC)로 시공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고,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생활자원보관소(재활용품 보관 및 쓰레기분리수거)가 주거동의 주변부에 설치되어 냄새, 미관저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함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동일한 수량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음
- 단지 여건에 의해 조경관련 시설물 및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및 초화류 외의 식재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놀이터, 주차장 진출입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2동을 제외한 다른동에서는 지상 주차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동일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진출입구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지하주차장 외벽면이 노출되며, 1동 서측부터 3동 북측까지 옹벽이 설치됨(팜플렛 32페이지 단지배치도 참조)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단지 내 일부 구간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2개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제연철편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주로 화강석과, 석재뿔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일부분에 한하여 외부수성페인트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59A-1형 5동 1호라인 및 8동 1호라인, 59A-2형 1동 4호라인 및 2동 1호라인, 59B-1형 전체라인 및 59B-2형 1동 3호라인에 4층부터 최상층까지 화재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1~3층에는 대피공간 대신 발코니가 설치됨
-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불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에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바닥마감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임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진입층과 비진입층의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 기준이 상이함
- 일부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 시 주의를 요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중 한곳에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흡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매립 설치(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되며, 침실2,3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됨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예정임
- 일부 타입 3층부터 10층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됨(3층은 발코니에 설치됨)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발코니에 있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각 층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비데는 59타입은 부부욕실(51타입은 공용욕실)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을 원할 경우 수분양자가 입주 후 직접 변경하여야 함
- 욕실바닥배수는 부부욕실의 경우 샤워부스 내 1개소, 공용욕실에는 세면기 하부 1개소 설치됨
- 주방환기는 공용배기시스템으로 옥상층에 공용환기팬이 설치되며, 세대에 설치되는 렌지후드에는 별도의 환기팬이 설치되지 않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학교명	개교일	해당 교육청
초	초1	미정	경기도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2	미정	
	초3	2019.9월 예정	
중	중1	미정	
	중2	2019.9월 예정	
고	고	미정	

※ 하남김일지구내 학교는 총 6개소(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추후 지구계획 변경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선(또는 벽체외부끝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실시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고기밀창호	적 용
고효율기자재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고효율조명기구	적 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6.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5	(주)NHF제15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41-88-00677)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농협은행 주식회사 (104-86-39742)	(주)케이씨씨건설 (214-81-69965)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7. 당첨자 서류제출 장소 및 계약장소 안내

■ 약도 및 찾아오시는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 주 소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대중교통 이용시 '황산사거리'에서 하차)

■ 오시는길
· 일반 : 112번, 112-1번, 112-5번, 13-2번, 30-3번, 16번, 23번
· 직행 : 9301번
· 간선 : 341번
※지하철 이용시 5,8호선 천호역 6번 출구 또는 강동역 1,4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로 환승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방문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평일 09:00~18:00)

- * 토·일요일은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 웹사이트 주소 : www.sweetcitya5.co.kr. 모바일웹사이트 주소 : m.sweetcitya5.co.kr.

2018. 10. 24.

■ 시 행 사 : (주)NHF제15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